| 의안번호 | 제 | 호 |
| :--- | ---: | :--- |
| 의 결 | 2009 년 | 월 | 일 \(~\left(\begin{array}{rl}(제 \& 회) \\

\hline 연 월 일 \& \\
\hline\end{array}\right.\)

##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

| 제 출 자 | 충 청 북 도 지 사 |
| :--- | :---: |
| 제출연월일 | 2009년 3월 10 일 |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필

##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

| 의 안 <br> 번 호 | 328 |
| :--- | :---: |

제출연월일 : 2009 년 3 월 10 일
제 출 자 : 충 청 북 도 지 사

## 1. 제안사유

○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.

## 2. 주요내용

$\bigcirc$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$\bigcirc$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$\bigcirc$ 소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(안 제 4 조)
3. 의안전문 : 붙 임

## 4. 신 - 구조문 대비표 : 해당없음

5. 관계법령 발췌 : 붙 임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##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

제1조（목적）이 조례는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．

제2조（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등）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 행령」（이하＂영＂이라 한다）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 시시설（이하＂광고물 등＂이라 한다）을 표시 또는 설치（이하＂표시＂라 한 다）하고자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영 제4조제1항제 8 호에 따른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등은 원색사진과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．

제3조（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）（1）충청북도지사（이하＂도지사＂라 한다）는 영 제7조 및 영 제9조에 따라 광고물 등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 는 별지 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기록•관리하여야 한다．
（2）도지사는 영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 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만료일 30 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만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．다만，표시기간이 60 일 이내 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．

제 4 조（소위원회 설치 운영）（1）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 제 33조제5항에 따라 광고물관리심의소위원회（이하＂소위원회＂라 한다）를 설 치－운영할 수 있다．
1．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
2．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
（2）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 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．
（3）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되며，위원은 위원회의 위원

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.
(4) 소위원회는 제 1 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 무원 - 전문가. 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(5)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장이 정한다.

제5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별지 서식】

옥외광고물등 표시(변경)허가 및 신고대장

| (1) <br> 호 | 광고주(옥외광고업자) |  |  |  |  |  | 광고물등의 내용 |  |  |  |  |  |  | 관리자 |  |  | $\stackrel{(18)}{\stackrel{18}{4}}$ <br> 경 <br> 사 <br> 항 | (19) <br> 고 |
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
|  | $\begin{aligned} & \text { (2) } \\ & \text { 성 } \end{aligned}$ <br> 명 | $\begin{array}{\|l} \text { (3) } \\ \text { 죽 } \\ \text { 민 } \\ \text { 능 } \\ \text { 봅 } \\ \text { ㄴㅗㅗ } \end{array}$ | (4) <br> 소 <br> 명 | (ㅗ) <br> 화 <br> 번 <br> 호 | ⑹ <br> 소 | (7) <br> 옴 <br> 외 <br> 광 <br> $ㄱ ㅗ ~$ <br> 업 <br> 신 <br> 고 <br> 번 <br> 호 | ⑻ <br> 류 | (9) <br> 수 <br> 량 | $\stackrel{(10)}{7}$ <br> 격 | (11) <br> 시 <br> 위 <br> 치 | (12) <br> 시 <br> 기 <br> 간 | $\begin{aligned} & (\sqrt[13]{13} \\ & \text { 광 } \\ & \text { 고 } \\ & \text { 내 } \\ & \text { 용 } \end{aligned}$ | 준 <br> 공 <br> 일 <br> 자 | (15) <br> 명 | $\frac{(16)}{\text { 주 }}$ <br> 소 | 전 <br> 화 <br> 번 <br> 호 |  |  |
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
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
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
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
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
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
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
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
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

$364 \mathrm{~mm} \times 257 \mathrm{~mm}\left(\right.$ 보존용지(1종) $70 \mathrm{~g} / \mathrm{m}^{2}$ )

## 관련법령 발췌

## 【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】

제 3 조 (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) (1)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지역•장 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(이하 "광고물등"이라 한다)중 대통령 령이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특별자치도지사•시장•군수 또는 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 한다. 이하 "시장•군수 또는 구청장"이라 한다)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•군수 또 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 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1997.12.13, 2001.7.24, 2002.12.30, 2004.12.23, 2007.12.21>

1.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36 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
2.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
3.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
4.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
5. 도로•철도•공항•항만•궤도•삭도•하천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
6. 기타 미관풍치의 유지 및 도시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•장소 및 물건
(2)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종류•모양•크기•색깔, 표시 또는 설치 의 방법 및 기간등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.

제3조의2 (광역단위 광고물등에 관한 허가 등 에외) 제3조제1항에도 불 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에 제작•표시•설치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. 허가를 변경하 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1. 2 이상의 특별시•광역시•도 및 특별자치도(이하 "시•도"라 한다)를 걸쳐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통수단 본사 소재지의 특별시장•광역시장•도지 사 및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•도지사"라 한다)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2. 2 이상의 시•군 또는 자치구를 걸쳐 운행하는 경우에는 시•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[본조신설 2007.12.21]

제7조 (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) (1)광고물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 하여 시•도 및 시•군•자치구에 각각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01.7.24, 2007.12.21>
(2)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내지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(3)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【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】

제7조 (허가 및 신고절차등) (1)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(이하 "광고물등"이라 한다)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•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신고대상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제 1호 및 제2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며, 시•군 또는 구(자치구 를 말하며, 이하 "시•군•구"라 한다)조례가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시•군•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원색사진 과 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도서의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개정 1993.2.24, 1997.2.6, 1999.2.26, 2001.11.22, 2005.6.23, 2005.6.30>

1.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 고물등의 원색도안
2. 광고물등의 형상•규격•재료•구조•디자인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
3. 타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4.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심의관련서류와 광고물등 의 표시에 따른 건물의 구조안전확인서류로서 시•군•구조례로 정하는 서류
(2)시장•군수 또는 구청장은 광고물등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 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광고물등중 현수막•벽보•전단의 경우에는 시•군•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필증의 교부에 갈음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 <개정 1999.2.26, 2001.11.22, 2005.6.23>
(3)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게시시설에 표시되는 광고물과 함께 그 게시 시설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물에 대한 허가 또 는 신고수리는 게시시설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

다. <개정 2001.11.22>
(4) 법 제 3 조의 2 에 따라 특별시장•광역시장•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(이 하 "시•도지사"라 한다)에게 광역단위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광고물등의 허 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, 제9조제1항부 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6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시장•군수 또는 구 청징"은 "시•도지사"로, "시•군•구조례"는 "시•도조례"로 본다. <신설 2008.7.9>

제33조 (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등) (1)법 제7조제 1 항에 따른 시•군• 구에 두는 위원회(이하 "시•군•구 위원회"라 한다)의 위원장은 당해 시• 군•구의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(담당국장이 없는 시•군•구의 경우에는 부단체장을 말한다)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가 된다. <개정 1997.2.6, 2001.11.22, 2005.6.23, 2008.7.9>
(2)위원은 관계공무원,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등중에서 시장•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 원의 수는 위원장 -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반수미만이어야 한다. <개 정 1997.2.6, 2001.11.22, 2005.6.23>
(3)위원장•부위원장 또는 위원은 본인•배우자•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와 직접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. <신 설 1997.2.6>
(4)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한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 간으로 하며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가 특정한 직위를 이유로 임명 또 는 위촉된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(5)시•군•구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 인 이상의 위 원으로 구성되는 소시•군•구 위원회를 설치•운영할 수 있다. <신설 2001.11.22, 2008.7.9>
(6)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 <개정 2008.7.9>
(7)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

그 직무를 대행한다. <신설 2008.7.9>
(8) 시•군•구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, 출석위

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신설 2008.7.9>
(9) 시•군•구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그 위원회에 간사 1 명을 두되, 간사는 시장•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 서 임명한다. <신설 2008.7.9>
(10) 시•군•구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설치•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•

군•구조례로 정한다. <신설 2008.7.9>
(11)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 - 도에 두는 위원회(이하 "시 - 도 위원회"라 한 다)의 구성 - 운영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시•군•구"는 "시•도"로, "시•군•구조례"는 "시•도조례"로 본다. <신설 2008.7.9>
제34조(위원회의 기능) (1) 시•군•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법 및 이 영에 따라 시•군•구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
2. 시•군•구조례에서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시•군•구 위원회에 붙 일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
(2) 시-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3. 법 제 5 조의 2 제 1 항 따른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한 예산확보 및 중요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
4. 법 제5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시•도지사(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가 관할 시•군•구의 옥외광고 종합발전을 위하 여 수립 - 시행하는 시•도 단위 지원계획과 그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 항
5. 법 제5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제2호에 따른 지원계획의 효율적 추진 및 종합적 조정을 위하여 시장•군수 또는 구청장에 대한 권고 등의 기 준 제시에 관한 사항
6. 법 제 5 조의 2 제 4 항에 따라 시장•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광고물등 의 정비 시범지역 지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[전문개정 2008.7.9]

제36조 (수당과 여비) 시•군•구 위원회, 시•도 위원회 또는 정책위원회 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 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08.7.9>

